

정부 규제의 올바른 이해와 합리적 규제 완화

李承哲*

규제 완화의 필요성

과거 급속한 경제 개발 과정에서 도입·확산되어 온 정부 규제는 새로운 전환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경제 규모의 확대, 국제화·개방화 시대로의 진입, 그리고 정치·경제의 민주화와 자율화 추세에 따라 과거와 같이 政府가 民間의 경제·사회 활동을 規制하기가 어려워졌고, 이에 따라 規制가 본래의 목적을 상실하고 副作用을 빚어내는 경향이 심화되고 있다. 과거와 같은 정부 주도하의 경제 운영과 과도한 시장 개입은 더 이상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지 못하며 오히려 경제의 활력을 위축시키고 국제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장애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매우 설득력있게 받아들여졌다.

이같은 공통된 인식을 바탕으로 정부는 규제 완화 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규제 완화는 아직까지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¹⁾

*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오하이오주립대학교 경제학박사, 산업조직론

정부 규제에 대한 인식 제고가 필요

규제 완화 정책이 유행처럼 퍼진 이후 정부 규제의 실태와 문제점 및 향후 개선 방안에 관한 논의는 이미 다양한 형태로 제시되어 있어서 규제 완화에 관한 국민적 합의가 어느정도 이루어진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규제를 실질적으로 완화하려고 하면 관료나 학자뿐만 아니라 이해 당사자들과 국민들마저도 규제 완화를 반대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즉, 규제 완화의 총론에는 찬성하지만 각론에는 반대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된 이유는 정부 규제가 어떤 경우에 필요하고 어떤 경우에 불필요한 지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 개입과 규제의 規範的 根據가 되는 시장 실패의 여러 요인들을 비판적으로 재검토하여 보고, 정부 규제없이 시장의 역할로만

1) 스위스의 국제경영연구원(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가 매년 발간하는 *The World Competitiveness Report*에 의하면 경제에 대한 정부 개입에 있어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4개국 중 한국이 가장 높은 강도를 나타내고 있다고 한다. 법적·제도적 환경, 통화 금융 정책, 정책의 효율성 및 합리성, 정책 신축성, 그리고 행정권의 분산도 등을 고려한 정부 개입의 정도는 우리나라가 경쟁국들에 비해서 심각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수행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봄으로써 규제 완화에 관해 보다 향상된 이해의 합의점을 찾을 필요가 있다.

규제의 목적을 크게 두 가지로 보면 시장 실패의 교정과 사회적 형평의 달성으로 요약된다. 사회적 형평의 달성은 규범 경제학의 분야이고 사회적 가치 판단에 따라 결정될 분야이므로 논리적 분석은 어려우나 시장 실패를 치유하기 위한 정부 개입에 관해서는 보다 과학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러한 인식의 기초를 바탕으로 하여 규제 완화의 합리적인 추진 전략을 살펴보고자 한다.

시장 실패는 제한적인 범위에서만 발생

시장 실패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한 경제 주체의 경제 활동에 따른 便益 또는 費用이 다른 경제 주체에게도 과급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외부성(externality)이다. 외부성에는 다른 경제 주체에게 得을 주게 되는 外部 經濟(external economy)가 있는데 국방이나 치안 등과 같이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 서비스가 외부 경제의 대표적인 예들이고, 이와는 반대로 손실을 입히는 外部 不經濟(external diseconomy)가 있는데 공해나 환경 문제 등이 이에 해당된다.

특정 경제 주체의 활동이 외부 불경제를 끼치는 경우에 개별 경제 주체는 외부 불경제를 무시하므로 생산 비용을 과소 평가하여 사회적으로 필요한 것보다 과대 생산을 한다. 반면에 특정 경제 주체의 활동이 외부 경제를 끼치는 경우에는 자신이 직접 생산하기보

다는 남의 활동에 無賃乘車(free-riding)하려는 동기를 가지게 되므로 사회적으로 필요한 것보다 과소 생산을 하게 된다. 외부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각종 規制나 租稅 및 補助金 制度를 통하여 외부성에 따른 經濟的 誘引을 再調整할 경우 적정 생산을 유도하여 資源의 效率的 配分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 규제의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

외부성에 근거한 정부 규제 논리는 가장 대표적인 규제 논리이고 비판을 적게 받아온 분야이다. 그러나 외부성의 문제도 일정한 조건을 갖춘다면 시장 기구에 의해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 Coase(1960)의 주장이다.²⁾ Coase 정리에 의하면 경제 주체간에 去來 費用이 없는 경우에는 최초의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 자원의 최종 사용권은 經濟 主體間의 자발적인 거래에 의해 그것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곳으로 흘러가게 되고 따라서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이룰 수 있다고 한다. 예를 들면 특정 지역에서 일정량의 공해를 발생시키는 것이 비효율적이라면 공해 배출이 허용되든 금지되는 최종적인 결과는 기업과 인근 주민들과의 협상에 의해 공해를 배출시키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Coase는 정부가 경제 주체의 특정 행위에 대해 매매 가능한 財産權을 設定하기만 하면 각 경제 주체간에 자발적인 거래 계약에 의해 외부성을 내부화하기 위한 행동을 하므로 외부성의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2) Ronald H., Coase, "The Problem of Social Cost", *Journal of Law and Economics*, 1960, pp. 1~44 참조.

우리의 일상 생활에서 관찰되는 조직과 계약들의 대부분은 이러한 외부성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유통업자 판촉 활동이 다른 유통업자에 의해 무임승차되는 경우 이러한 외부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종 거래 계약이 사용된다고 한다.³⁾ 외부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것보다는 시장의 원리에 의해 경제 주체간의 계약이 잘 이루어지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이러한 계약을 정부가 제도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더욱 좋은 방법이다.

둘째, 특정 산업이 自然 獨占(natural monopoly)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다. 생산을 많이 하면 할수록 生産費가 낮아지는 規模의 經濟(economies of scale)가 존재할 때에는 가장 대규모의 기업이 가장 낮은 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價格 競爭의 결과 오직 한 기업만이 살아 남게 된다. 이러한 특성을 가진 산업에서는 인위적인 進入 障壁없이도 자연 독점 기업이 생기므로 정부가 가격과 생산량을 규제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지고 있다.

대부분의 자연 독점 산업은 공기업의 형태로 운영되는데 이러한 경우 문제점은 독점권을 부여받은 공기업의 행태와 이에 따른 비효율의 문제 그리고 과연 어느 산업이 자연 독점인가에 대한 基準 設定이 어렵다는 것이

다. 뿐만 아니라, 기술 개발에 따라 자연 독점 산업의 특성이 사라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⁴⁾ 자연 독점형 산업을 그대로 市場原理에 맡겨 둘 경우 그 競爭 過程에서 불필요한 重複 投資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하나, 중복 투자의 논리도 자연 독점의 경우에만 이를 적용할 수만은 없다. 모든 산업에 있어서 경쟁의 과정에서 도태되는 기업이 생기는데 이러한 기업의 투자는 불문에 두고 자연 독점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도태되는 기업의 투자만을 중복 투자로 간주하는 것은 논리의 불일치라 할 수 있다.

자연 독점이 독점력을 행사할 수 있는 원인은 합몰 비용의 성격을 가진 고정 투자가 신규 기업의 진입을 어렵게 하기 때문이므로 이에 대한 정부의 바람직한 정책은 직접 진입 규제를 하는 것보다 합몰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신규 진입의 가능성에 의한 잠재적 경쟁 때문에 자연 독점자가 독점력을 행사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다.⁵⁾ 이러한 방법의 일환으로 Demsetz(1968)는 합몰 비용이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합몰 비용은

3) G.H., Mathewson and R.A. Winter(1984)는 수직적 거래 계약이 경쟁 제한보다는 외부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된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입증하였다.

4) 통신 산업의 경우 과거 유선 통신 시대에는 막대한 통신망 투자에 합몰 비용(sunk cost)의 성격이 있었으므로 자연 독점적 성격이 있었을지 모르나 오늘날 무선 통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고정 투자의 규모도 줄었고 성격도 합몰비용이 아니므로 더 이상 자연 독점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

5) Baumol, Panzar, and Willig(1982)는 경합 시장(contestable market)이론을 소개하면서 합몰 비용이 없는 시장에서는 진입과 퇴출이 완전히 자유로우므로 독점 기업이라 할 지라고 잠재적 경쟁 때문에 독점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정부가 투자하고, 사업의 운영권만 경쟁 입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면 자연 독점의 피해도 없애고 정부 실패도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⁶⁾

셋째, 非對稱 情報(asymmetric information) 하에서는 시장 실패가 발생하므로 정부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한다. 비대칭 정보란 경제 주체간에 정보가 비대칭적으로 분포하는 것을 말하는데, 예를 들면 생산자는 자신이 생산·판매하는 상품의 품질에 관해 우월한 정보를 손쉽게 획득할 수 있으나, 소비자는 상품을 사용하여 보지 않고는 사전적으로 알 수 없다. 이러한 경우에는 소비자가 구매시점에서 상품의 품질을 과대 평가하여 완전 정보가 있었으면 결정되었을 가격보다 필요 이상으로 높게 지불하게 되므로 시장의 실패가 발생한다고 여겨지고 있다.⁷⁾ 비대칭 정보 문제는 생산자와 소비자사이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와 근로자, 보험 회사와 보험 가입자 등 계약 쌍방간에는 항상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非對稱 情報의 문제로 인한 시장의 실패를 교정하기 위해 시장에서 거래되는 각종 상품에 대한 제반 사항을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免許 制度, 輸出品 檢查, 各種 資格 制度, 品質 確認 制度 등의 규제를 하고 있다.

비대칭 정보 문제는 과연 시장 기능으로 극복될 수 없는가? 우선 비대칭 정보 문제는 소비자뿐만 아니라 생산자에게도 피해를 준다. 즉, 비대칭 정보 문제가 있으면 생산자가

제공하는 정보를 소비자가 잘 믿으려고 하지 않으므로 생산자도 정보 제공에 상당한 어려움을 갖는다. 따라서 적정 가격을 받기 위해서는 品質 保證 制度, 商標 이미지와 공신력 제고를 위한 투자, 거래 쌍방간의 적절한 계약, 자율적인 품질 등급의 표시 등 생산자도 정보 제공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정보의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사전적 규제를 하는 것보다는 정보의 유통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의 연구가 필요하다. 정보란 공공재적 성격이 많으므로 정보에 관한 지적 소유권을 보호하고 정보의 유통을 가로막는 각종 정부 규제를 완화하여 정보 거래에 특화된 새로운 기업의 등장을 촉진한다면 비대칭 정보의 문제는 시장에서 해결될 수 있다. 예를 들면 현재와 같이 상품 정보를 발표할 수 있는 권리를 민간에 대해서는 금지하고 정부만 독점할 것이 아니라 민간에게도 품질 정보의 공표권을 부여해 주어야 한다.

넷째, 독과점 시장 구조와 競爭 制限 行爲도 때로는 시장 실패로 분류되어 공정거래법에 의해 규제를 받고 있다. 자연 독점적인 성격을 갖지 않고 정부에 의한 인위적인 진입장벽도 없는 산업이 독과점 구조를 갖고 있는 경우 이러한 기업은 자신의 독과점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생산량을 줄이고 가격을 올리는 행동을 취함으로써 시장 실패를 일으킨다고 한다.

독점기업은 생산량을 줄이고 가격을 올려

6) Harold Demsetz, "Why Regulate Utilities?", *Journal of Law and Economics*, 1968 참조.

7) 정보 문제가 경제 현상에 끼치는 영향에 관한 가장 대표적인 연구인 George J. Stigler(1961)의 논문을 참조.

독과점 이윤을 획득한다고 하나 실제로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지에 관해서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예를 들어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매년 지정되고 있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들이 과연 생산량을 줄여 가격을 올림으로써 독과점 이윤을 획득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이다. 정부에 의한 진입 규제가 없는 산업에서 특정 기업이 독과점 기업이 되었다면 生産性 우위가 독점의 원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자유로운 경쟁에 의해 획득한 독점권을 규제한다면 비효율적 생산자를 보호하고 효율적인 생산자를 규제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경쟁을 촉진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⁸⁾

불공정 거래 행위는 수직적인 거래 계약과 수평적인 거래 계약으로 나뉘어진다. 제조업자와 유통업자간의 수직적 거래 계약은 거래 쌍방간의 교섭력에 따라 불공정할 수 있으므로 시장의 실패로 인식되고 있다. 예를 들면 제조업자가 유통업자에 대해 상품의 재판매 가격의 상·하한선을 결정하는 再販賣 價格維持, 경쟁 상품의 취급을 금지하는 排他 條件附 去來, 유통업자간의 사업 영역을 보장해 주기 위한 판매 지역 제한 등을 대표적인 불공정한 수직적인 거래 계약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수직적 거래 계약은 流通業者와 製造業者의 販賣 促進 努力에 대한 적절한 재산권의 귀속을 보장하기 위한 경쟁

촉진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⁹⁾ 또한 제조업자가 수직적 거래 제한을 사용하는 목적은 생산량을 줄이고 가격을 올리려는 것보다는 더 많은 상품을 팔기 위해 사용하기 때문에 소비자 후생도 감소시키지 않는다.

경쟁 제한 행위중 가장 경계하여야 할 대상은 일반적으로 카르텔이라고 불리어지는 기업간의 수평적 담합이다. 기업간의 담합은 價格維持, 市場分割, 進入障壁의設定 등 여러 불공정 행위를 유발하는 主要原因이 되고 있다. 기업간의 담합은 경제적 폐해가 상당히 많은 경쟁 제한 행위이므로 정부는 이와 같은 기업간의 담합을 방지하는 데에 공정 거래 감시 기능을 집중시켜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정부가 사업자 단체를 정책적으로 육성하여 사업자간의 담합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면 사업자 단체에 가입하지 않으면 해당 업종에 진출할 수 없는 단체 가입 강제 제도, 사업자 단체를 통한 각종 정부 지원과 행정 지도, 사업자 단체를 통한 정부 조달 물자 단체 수의 계약 제도 등은 사업자 단체의 위상을 강력하게 만들어 담합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주고 있다.

규제 완화에 관한 그릇된 믿음

경제적 규제는 시장 경쟁을 제한하고 사회적 규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한 규

8) 독점 규제에 관한 비판적인 연구로는 越後和典, 「競争과 獨占 - 産業組織論 批判」, 1990.11. 참조.

9) 공정 거래 규제에 관한 비판중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는 Robert Bork의 *Antitrust Paradox: A Policy at War with Itself*(1978)가 있다.

제라고 단순히 정의함으로써 경제적 규제는 완화해야 하고 사회적 규제는 강화해야 한다고 단순히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경제적 규제라고 완화해야 하고 사회적 규제라고 강화해야 한다는 일반론을 펴기보다는 경제적 규제이든 사회적 규제이든 시장의 실패가 존재한다면 규제를 강화해야 할 것이고 시장의 실패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규제를 완화해야 할 것이다.

규제의 필요성을 논의하면서 개방화·국제화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규제 완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의 배경에는 국제화 시대에는 정부 규제의 피해가 크고 폐쇄 경제에서는 그 피해가 적으므로 개방화 시대에는 규제 완화를 더욱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믿음에 기초를 두고 있다. 그러나 규제의 피해란 경제가 얼마나 개방되어 있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규제가 경제 주체의 활동을 얼마나 제약하느냐에 달려 있다. 다만 폐쇄 경제하에서는 규제로 인한 피해가 내재되어 현실화되지 않고 경제가 개방되어 있으면 규제로 인한 피해가 명시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개방 경제하에서는 규제의 피해가 더욱 커 보일 뿐이다. 결과적으로 규제 완화란 경제의 개방 정도에 따라 추진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규제가 일으키고 있는 경제 사회적 왜곡의 정도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규제 완화의 추진 전략

규제 완화의 핵심은 진입 관련 규제를 철

폐하여 자유로운 경쟁을 보장하는 것인데 이러한 인·허가제의 개선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별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신규 진입을 완화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또는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는 식의 형식적인 규제 완화가 실제적인 효과를 변화시키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므로 인가, 등록, 신고의 요건을 대폭 완화하든가 혹은 등록이나 신고 제도를 아예 없애고 자유업으로 하여 기업이 관청에 갈 필요가 없게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규제 완화의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는 규제 집행의 민간 위탁은 집행권이 민간에 넘어갔기 때문에 외형상 정부 기능이 줄어들었다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나 규제 제도가 그대로 존재하므로 규제가 완화된 것은 결코 아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불합리한 규제 제도가 존재하는 한 현실과 제도와의 괴리에서 생기는 문제는 필연적으로 발생하기 마련이므로, 그러한 제도의 집행을 정부가 하든 민간이 하든 문제의 발생을 피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규제 제도 자체를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규제 제도의 개선 방법중 가장 바람직하다고 여겨지고 있는 것은 사전적 규제에서 사후적 규제로 전환하고 사후적 규제의 집행을 철저히 하는 것인데 이러한 시도가 아직까지 미약한 실정이다. 각종 자격증 소지자의 의무 고용 제도를 예로 들면 의무 고용자수를 단순히 줄인다든가 의무 고용이 적용되는 사업장의 범위를 줄이는 차원에서 규제 완화가 추진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규제

를 아예 폐지하고 대신 보건, 영양, 안전 등과 같은 의무 고용 제도가 당초에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에 관한 기준만 정부가 정하고 이를 사후적으로 철저히 감독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규제 정책이 될 것이다.

規制緩和란 추진 과정에서 여러가지 副作用이 나타나고 단기적인 혼란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副作用이나 단기적인 문제점이 規制緩和 때문에 일어나는 것으로 오해하게 되어 다시 規制를 강화하자고 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 내는 과정을 반복하게 된다. 따라서 段階的 緩和보다는 획기적이고 과감하게 특정 분야에서의 모든 規制를 동시적으로 緩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면 進入과 가격이 規制되어 있는 산업에서 가격 규제만 완화한다면 가격 상승이 일어나게 될 것이므로 진입 규제도 동시에 완화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절대적인 장애 요인중의 하나는 기존의 경제 정책의 기조를 벗어나는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아예 정책 고려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교육, 공업 입지, 교통 정책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수도권정비법은 수도권 인구 집중을 억제한다는 이유 때문에 논의의 대상에서 무비판적으로 제외되고 있다. 규제 완화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규제 정책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끼치는 경제의 기본 체제에 대해서도 보다 심도있는 재검토가 필요하다.

근원적인 규제 완화의 필요성

정부 규제는 시장이 자원 배분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시장 실패의 경우 이를 修正, 補完 또는 代替하여 정부가 자원 배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에 그 타당성을 두고 있다. 그러나 정부 규제의 근거로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시장 실패 현상조차도 시장 기능에 의하여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앞에서 보았다.

이처럼 시장 기능의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에 시장 실패가 많이 관찰되는 것처럼 보여 우리나라에는 시장 원리가 잘 작동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시장 실패의 근본적인 원인을 자세히 살펴보면 거기에는 대개 정부 규제가 있기 마련이고, 정부가 시장을 대신하여 자원의 배분을 담당하거나 수행하고자 하는 정부 규제는 또 다른 왜곡 현상을 발생시켜 새로운 시장 실패를 일으키고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문제의 근원을 치유하지 않고 피상적인 규제를 한다면 규제 완화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오히려 규제가 규제를 낳는 규제의 피라미드 현상만 가속화시킬 것이다. ♣

참고문헌

- 김재홍·이승철·김강수·홍성중, 「정부 규제
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 정
부규제에 대한 기업인 의식 조사를 중심으
로-」, 행정규제민간연구센터, 1992.
- 이승철, “정부 규제의 근거로서의 시장 실패
에 관한 연구”, 「한국 행정 연구」, 한국
행정연구원, 1992.
- 최병선, 「정부 규제론 - 규제와 규제 완화의
정치 경제 -」, 법문사, 1992.
- 행정규제완화 민간자문위원회, 「행정 규제
완화에 관한 건의」, 1992. 3.
- 越後和典, 「競争과 獨占 - 産業組織論 批判」,
1990. 11.
- Baumol, William J., John C. Panzar, and
Robert D. Willig, *Contestables Markets
and The Theory of Industry Structure*,
Harcourt Brace Jovanovich, Inc. 1982.
- Bork, Robert, *Antitrust Paradox: A Policy
at War with Itself*, Basic Books, 1978.
- Coase, Ronald H., “The Problem of Social
Cost,” *Journal of Law and Economics*,
1960, pp.1-44.
- Demsetz, Harold, “Why Regulate Utilities?,”
Journal of Law and Economics, 1968.
- Kahn, Alfred E., *The Economics of
Regulation: Principles and Institutions*,
The MIT Press, 1989.
- Mathewson, G.H. and R.A. Winter, “An
Economic Theory of Vertical Restraints,”
Rand Journal of Economics, 1984,
- Stigler, George J., “The Economics of
Informatio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961, Reprinted in George J. Stigler *The
Organization of Industry*,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3, Ch 16,